

보도자료

2010년 3월 30일(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

가. 통신정책기획과 김동철팀장(1880) 나. 다 정책총괄과 이승원팀장(2170)
라. 마 방송정책기획과 이상학과장(2410) 바. 시청자권익증진과 양한열과장(2690)
사. 시장조사과 이창희과장(2630)

2010년 제17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7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2010 ~ 2011년도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 지정계획(안)」에 관한 건

-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2010 ~ 2011년도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한 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기본적으로 기존 사업자를 재지정함. 다만, 통신사업자간 합병에 따라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 및 요금감면서비스 대상 사업자를 각각 4개사, 9개사 축소 지정

< '10~'11년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 지정계획(안) 내용 >

대상 역무	제공 사업자('10 ~ '11)	'08 ~ '09년 제공사업자와의 비교
유선전화서비스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KT	변동 없음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KT, SKT 등 서비스 제공 10개 업체
	선박무선전화	KT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	KT, SKT 등 서비스 제공 110개 업체	4개사 감소 (KTF 합병, LG데이콤·LG파워콤 합병, SK네트웍스가 SK브로드밴드에 양도)
		9개사 감소 (KTF 합병, LG데이콤·LG파워콤 합병, SK네트웍스가 SK브로드밴드에 양도, 리얼텔레콤 사업 폐지, 인터넷접속 사업자 4개 감소)

나. 「방송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첨부1 참조)

- 2010년도 경제전망에 따라 자산운용의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방송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다.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 지역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기간(3년)이 만료(10.4월)됨에 따라,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개정안을 심의하여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차기 고시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의결함

- 수도권 지상파DMB 및 위성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과 지역 지상파 DMB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함

※ 수도권 지상파DMB는 기금 징수를 차기고시까지 유예 중이고, 위성방송사업자는 5년간 유예

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총 9인)을 위촉하기로 의결함

<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명단 >

성명	성별	소속
오택섭	남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유의선	남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조성호	남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김영원	남	숙명여대 통계학과
최선규	남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김유정	여	호서대 디지털비즈니스학부
이원우	남	서울대 법과대학
우지숙	여	서울대 행정대학원
함석천	남	서울고등법원

마.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건
(별도보도자료 참조)

-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직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바. 「시청자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청자 불만 처리 관련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청자 불만 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사. (주)KT의 IDC 이용자에 대한 전용회선 제공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 (주)KT가 IDC*사업과 전용회선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자사의 IDC와 타사(현대정보기술) IDC를 동시 이용하는 고객((주)NHN)에 대해

- IDC 간(KT IDC ~ 현대정보기술 IDC) 일반전용회선 제공 및 KT 인터넷망과 현대정보기술 IDC 간 인터넷전용회선 제공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거부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IDC(Internet Data Center, 집적정보통신시설) :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일반고객의 **통신장비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장비 관리를 위한 **첨단 설비, 보안 체계, 고속의 인터넷회선** 등을 집적하여 고객에 임대·제공

자산운용지침 주요 개정내용

- (적정 유동성 규모 산정 분석기간) 적정 유동성 규모 산정을 위한 수입과 지출 분석기간을 4년('05년~'08년)에서 5년('05년~'09년)으로 확대
 - (적정 유동성 규모) 500억원('09.)에서 533억원('10.)으로 확대
- (목표 수익률) 경제회복 기초를 반영하여 4.12%('09.)에서 4.77%('10.)로 상향
 - 단기자산은 3.21%에서 3.86%, 중장기자산은 4.39%에서 5.04%로 상향
- (자산 배분기준) 단기자산 23%, 중장기자산 77%('09년과 동일)의 범위에서 자산군별 목표비중 조정
 - (확정금리형/ 채권형)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확정금리형 확대(43%→45%), 채권형 축소(30%→25%)
 - (주식형) 목표수익률 상향에 따라 주식형 비중 확대(4%→7%)
-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자산배분 한도 신설
 - 투자자산 다각화를 위하여 대체투자상품의 자산배분 한도를 주식형 상품에 대한 상한비중(7%)으로 설정
 - ※ 대체투자상품 : 파생상품, 부동산펀드, 해외펀드 등 예금, 채권, 주식과 같은 전통적 상품 이외의 투자상품

「시청자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불만처리 종류 보완

- 방송법 제100조 개정으로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조치 결과에 따라 제재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짐에 따라, 규칙에도 ‘과징금 부과 건의’ 추가
- 시청자 불만을 처리함에 있어, 제재조치 등을 건의하기에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 ‘권고’ 및 ‘의견제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처리)①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불만신청을 인용 또는 부분 인용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종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건의 2.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의 건의 3.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변경명령의 건의 4.기타 관련사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p>제15조(처리)①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불만신청을 인용 또는 부분 인용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종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건의 2.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건의 3.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변경명령의 건의 4.불만사항에 따른 시청자의 이익침해 정도 등이 경미하여 1호 내지 3호의 조치를 건의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의견 제시

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불만처리 판단기준 마련

-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시청자 불만 처리시의 판단기준을 규칙에 명시하여 향후 시청자 불만 처리 관련 심의시에 참조

현 행	개 정 안
<p>제 15조②불만처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관부서, 방송사업자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p>	<p>제15조②(신설)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방송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2.이용약관 또는 시청자와 체결한 기타 약정의 위반여부 3.시청자의 이익 침해 여부 및 이익 침해 정도 4.동일 또는 유사한 불만 신청 건수 5.불만 신청 후 신청인 피해 회복 등을 위한 노력 등 <p>③불만처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관부서, 방송사업자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p>

다. 당사자 사전 의견청취 의무화

- 방송법 제100조제5항 등의 취지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각종 명령 및 제재조치 건의에 앞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필수적으로 부여하도록 함

현 행	개정안
<p>제14조(의견청취) ①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불만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신청인, 관련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및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제14조(의견청취) ①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불만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신청인, 관련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및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u>다만, 위원회에 제15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건의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불만 관련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u></p>

- ※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